

「2019년도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」 주관기관 모집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창업 지원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주관기관(지자체)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9년 3월 19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지역 주도의 창업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혁신창업 활성화를 촉진
- (사업기간) 2019년(1년 한시)
- (예산규모) 24.5억원 이내
- (지원대상) 서울시 소재 기초자치단체(25개 자치구) 중 1개소
- (지원조건)
 - 총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국비 지원하고, 나머지 30%는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
 - * 지자체 대응 투자는 현금 매칭 조건
 - 부지 및 건물은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유휴 공간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시설·공간 확충에 중점(신축 건립비 지원 제외)
 - 창업지원 시설·공간 구축 이후 운영을 위한 인력, 재원 등은 지자체 확보 필수

- (시행주체) 중소기업부 직접수행
- (예산비목)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
- (예산집행내역) 창업보육실(BI), 코워킹스페이스, 시제품제작소 등 창업 지원에 필요한 시설 구축(리모델링), 장비 구입 등
 - * 인건비, 사업운영비, 신규 건축비, 토지구입 및 임차비용은 집행 불가

구분		지원내용	비고
인프라 조성	시설조성	· 리모델링 공사(BI, 시제품제작소 등), 가구집기 등	
	장비구입	·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교육·실습을 위한 제조장비 * 3D프린터, 레이저커터기 등 이용자와 공간특성에 따라 필요장비 선택 구매 · 각종 수공구, SW통신장비 등	

* 구축하려는 시설·장비에 적합한 환기 및 안전시설 구축 필수

2. 신청자격 및 참여요건

- 신청자격 : 서울시 소재 기초자치단체(25개 자치구)
- 참여요건 :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

1) 운영책임

- 시설 구축 이후 운영인력 확충, 운영비 확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으로, 시설 개소 이후 5년 이상 운영할 것

* 5년 이내 운영 중단 시, 장비 등 환수 조치

2) 공간확보

- 지자체별 창업지원 공간 수요에 따라 창업보육실, 코워킹스페이스, 시제품제작소, 회의실, 학습공간, 휴게공간, 사무실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
- 신청 시 창업지원 공간 구축 예정 공간을 선정하여 증명자료(소유주 약약서 또는 협약서 등)를 제출
- 임대인 경우 계약서는 최종 선정 이후 제출이 가능하나, 부지 확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 취소
- 시설의 일부 공간만 활용하는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창업지원 예정 공간과 기존시설의 공간적·기능적 분리가 필요

3) 대응자금투자

- 총 사업비*(시설조성 및 장비구입)의 30% 이상 현금 대응 투자(약약서 등 증명자료 제출)

* 부지·건물 확보 비용은 총 사업비에서 제외(지자체 자체 확보 필수)

구분	대응자금 산정기준
현금	· 자금 확보 증빙서류 제출 (통장 입금내역서, 추경예산편성서, 매칭 약약서, 지방재정투·융자심사 결과서(또는 계획서) 등)

4) 기타

- 사업계획 등에 관한 컨설팅 보완 요구를 수용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에 반영

3. 평가절차 및 기준

1) 최종 선정방법 및 예산 확정

- (선정) 서류·현장조사 및 PT 발표를 통한 종합평가로 선정
- (예산) 지원 대상 선정 후 구축 장비, 운영 프로그램, 대응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규모 조정 가능(필요시)

2) 세부 선정절차

- (서류평가)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대상 선정(선정 계획 대비 3배수 내외)
 - * 총 신청기관이 2배수일 경우 2배수 이내에서 선정
 - *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
- (현장조사)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사실 여부 확인 및 입지 적절성 등을 파악(체크리스트 작성)하여, 본 평가자료로 활용
- (대면평가) 제출서류, 현장조사결과,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종합 판단하고, 최종 선정기관 선별
 - *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(추가공모 가능)

< 평가방법 및 절차 >

단계	주요 내용	비고
서류평가	·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 본 평가 대상자 선정(60점 이하는 탈락 처리)	평가위원회
본 평가	↓ 현장조사 · 사업계획서 사실여부 확인, 입지·시설·수요여건 등 파악 * 지방청, 창진원, 혁신센터, 외부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점검 · 현장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기반 실사 진행 * 현장 실사 후 예정부지 변경 원칙적으로 불가	현장실사단
	↓ 대면평가 · 발표심사를 통한 사업계획 종합평가 및 최종 선정 *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	평가위원회

3) 평가 기준

평가항목	착안사항	배점
사업계획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추진 목적 및 전략의 타당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이해도, 사업취지와와의 적합성 - 지역별 여건과 잠재이용자 예측 적절성 ·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의 차별성(지역 내 타 창업지원 공간과의 차별성, 연계방안 등 포함) 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	30
입지/인프라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업지원 시설·공간 입지의 적절성 · 인프라(공간, 시설, 장비)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	10
사업비 운영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· 대응투자 확보 방안 · 지자체의 타 사업과의 연계 활용 방안 	15
사업추진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추진 의지와 열정(지자체의 지원 의지, 사업 준비 정도, 사업비 매칭 규모 등) ·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 	20
지속발전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의 전문성, 적합성 · 운영재원 확보방안,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천 가능성 ·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 파급 효과 · 단기, 중장기 성과지표와 목표의 타당성 	25
합 계		100

4) 추진 일정

- 사업공고 마감 : 4월 중순
- 평가 및 선정 : 4~5월 중
- 협약체결 : 5월 중
- 지자체 사업 착수 : 5월말
- 사업 완료 : 12월 초

4. 사업계획서 제출 및 유의사항

- 접수기간 : 2019.4.8.(월) ~ 4.17(수) 18시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
 -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, 사업신청서 원본 1부
 -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부
- 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방법 : 전자문서(공문) 제출
 - * 보조로 e-mail(star113@korea.kr, hyunsoochan@korea.kr) 송부
- 유의사항
 - 제출된 서류(파일)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
 -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 -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,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 조건 미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
 -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 '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', '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'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

5. 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(042-481-1690)